

第20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7.6.25. ~ 6.27.)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0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	개회식	293
II .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95
III .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301
IV .	부 록	
1.	의사일정안	315
2.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17
3.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19
4.	심사보고서	323
5.	학교용지매입비지방자치단체부담금전출촉구결의문채택의건	34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6월 25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05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11시 02분 폐식)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
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6월 25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0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0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 제출)
4.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성영용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과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 접수 상황 및 도의회 안건처리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1. 경과보고

[제205회-제1차 본회의]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6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22일 서수웅 교육위원회 외 6인의 발의로 학교용지매입비지방자치단체부담금전출촉구결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안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회기에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200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조 3,592억 7,257만 5,000원 중 충북교육홍보기획비 900만원, 혁신종합계획 및 관리비 1,500만원, 지방교육행정재정시스템 구축 운영비 7,000만원, 1학교 1인성 교육비 4,000만원, 통일 대비 교육비 800만원, 학교평가경비 3,600만원, 중등교과과정 운영비

1억 1,036만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행사 지원비 200만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경비 700만원, 교육문화회관 내부시설비 6,000만원, 민원업무경비 1,090만원,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비 1,000만원, 한글사랑관 운영비 2,106만원, 총 3억 9,932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5월 18일 제260회 도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0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시겠으며, 본회의 산회 후에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6월 26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6월 2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8분)

● 의장 성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같은

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성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3,732억 1,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539억 6,900만원으로 1,192억 2,700만원의 세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 292억 5,6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6,700만원, 지방채상환 89억 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09억 100

만원은 2007년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 3,739억 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조 3,732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4.2%인 1,944억 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5.8%인 1조 1,788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720억 5,900만원으로 91.4%인 1조 2,539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인 292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5%인 888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292억 5,600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는 47건에 97억 2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는 5건에 195억 5,400만원입니다.

또한 총 집행액 1조 2,539억 9,200만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6,743억 600만원, 물건비 395억 6,700만원, 경상이전비 3,602억 6,600만원, 자본지출경비 1,661억 8,900만원, 차입금상환 102억 500만원, 전출금 3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소송비용 200만원, 교원단체사무실 및 원어민 교사 전세권 2억 6,200만원, 대여학자금 419억 7,500만원으로 총 422억 3,8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 차입금 102억 400만원을 2006년도중에 전액 상환하여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2조 7,653억 6,300만원, 보존재산 9,300만원, 잡종재산 359억 800만원으로 총 2조 8,014억 3,600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만 2,118점에 1,156억 8,500만원입니다.

▶ 참 조 :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별첨 2)

(끝에 실음)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책 1)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책 2)

다음은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48억 1,959만원중 2006년도 보은중 태풍피해 복구비 외 2건의 사업비로

13억 9,7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1,678만원을 집행하고 학생종합수련원 조경사업비 1,94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6,10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18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시설 피해를 입은 보은중 태풍피해 복구비로 1,000만원과 2006년도 7월 16일과 17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설피해를 입은 학생종합수련원 외 9개 기관의 피해복구비로 13억 3,72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6년도 9월 30일,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2006년도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경비로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 참 조 :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3)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15분)

● 의장 성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이의건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서수웅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

[제205회-제1차 본회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

(11시 16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성영웅,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웅,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별첨 2)
- ▶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3)

※ 별 책 부 록

- ▶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책 1)
- ▶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책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6월 27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학교용지매입비지방자치단체부담금전출촉구결의문채택의건

附議된 案件

1.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 제출)
2.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3. 학교용지매입비지방자치단체부담금전출촉구결의문채택의건
(서수웅 위원 외 6인 발의)

○ 5분자유발언(김병우 위원)

(11시 00분 개의)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지역 주요행사 참석차,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최태호 교육정보화과장, 김준철 평생교육

체육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안세열 시설과장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혁신지도자과정 연수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1분)

● 의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김부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부웅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김부웅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1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던 바,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현액은 1조 3,720억 5,944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1%인 1조 3,732억 1,95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4%인 1조 2,539억 9,212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5.9%가 감소된 1,192억 2,73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중 97억 1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95억 5,409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잔액 1억 6,66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09억 188만원은 다음 연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89억 321만원은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3,732억 1,9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3,739억 7,857만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85.8%인 1조 1,788억 1,267만원이고 자체수입이 14.2%인 1,944억 682만원입니다.

아울러 징수결정액 중 1,264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0.1%인 7억 4,642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2,609억 9,08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10억 6,863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1조

3,720억 5,944만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1.1% 증가한 1조 2,539억 9,21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4%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292억 5,559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주성초 냉난방개선비 외 46건에 97억 15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감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비 외 4건에 195억 5,409만원으로 대부분 시설공사비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888억 1,17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혁신기획담당 및 법무담당 업무 소관 부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서간 7,939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영재교육자료 시·도 공동개발 취소로 인한 자체개발비 전용 1,250만원,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에 따른 전용 7,318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전년도 609억 3,900만원 대비 218.3%인 1,330억 4,318만원이 증가되어 총 1,939억 8,218만원으로 20년간 원리금 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대부분이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06년도에 77억 5,171만원이 발생하고 65억 897만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말 현재액 409억 9,564만원 대비 3%인 12억 4,273만원이 증가하여 총 422억 3,838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사업비 부족에 따른 차입금 89억 278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연도중에 차입금 191억 772만원 전액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의 채무액은 없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제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7,115억 2,715만원 대비 3.3%인 899억 906만원이 증가한 2조 8,014억 3,622만원으로 증액의 대부분이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신규 취득과 증·개축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55억 6,339만원 대비 0.1%인 1억 2,210만원이 증가한 1,156억 8,549만원입니다.

다음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결산에 있

어 재원구성별 내역을 보면 의존수입이 85.8%, 자체수입이 14.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자체수입이 전년도 8.5%에서 많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이월금 및 지방채 차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교육경비 보조 조례의 제정 및 지원액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교육경비 확충 방안 강구와 수입재원 발굴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편성 시 모든 세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정치이므로 반드시 정확할 수는 없으나 그 추정액은 세출예산 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산액과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일부 세입과목의 경우에는 과도한 편차를 보여 향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360억 5,993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6.5%로 전년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금액은 적으나 학예행사지원 여비 외 12건이 전액 불용되고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사업이 65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과정에

서 불용이 예견될 경우 추경 시 조정 등을 통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할 수 없을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서 이월된 금액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연초부터 집행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또 다시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 추진 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발생 등을 이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도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6년도 12월 말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부한 하반기 특별교부금 현안 사업비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월한 바,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정확한 재원을 판단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등 늘어가는 교육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48억 1,959만원 중 2.5%인 13억 9,7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보은중학교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1,000만원, 학생종합수련원 외 9개 기관에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11억 7,621만원,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충북전시관 전시 대행 용역비 5,000만원 등 총 12억 3,621만원을 지출하였고, 학생종합수련원 조경공사비 1,943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6,10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각종 재해복구와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충북전시관 전시 대행 용역 등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다만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충북전시관 전시 대행 용역 사업비의 경우 교육부의 보조금 교부시기와 추경예산의 편성시기의 불

일치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비비 지출이었으나 향후에는 교육부와 교부시기 조정 등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해야 할 사업이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결산안 작성에서부터 심사까지 수고하여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성영용

김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교용지매입비지방자치단체부담금 전출촉구결의문채택의건

(11시 19분)

● 의장 성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부담금전출촉구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서수웅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이 발의한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전출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매입비 50%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경비 중 최우선적으로 선행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적기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하는 법정부담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등으로 부과 징수한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중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즉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합니다.

개발사업의 허가로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향후 학교신설 계획을 보류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역 내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이 야기될 소지가 있

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 전 교육위원의 뜻을 모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학교용지 매입비 50%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출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백년지대개인 교육을 위한 학교신설 여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1. 학교시설은 교육환경개선의 근간이며 백년지대개인 교육을 외면하지 말고 학교용지 매입비 50%를 교육청에 즉시 전출하라.

1.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학교용지 매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1. 정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조속히 전출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2007년 6월 27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성영웅, 부의장 곽정수, 교육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감사합니다.

▶ 참 조 : 학교용지매입비지방자치단체부담금전출촉구결의문채택의건(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성영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수웅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병우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취지나 그런 부분에 저는 이의는 없는데요, 우리 요구사항 중에 첫째 사항에 문맥을 조금 바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성영웅

예, 말씀하시죠.

(김병우 위원 의석에서 “1항에 보면 ‘학교시설은 교육환경개선의 근간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며’를 ‘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므로’로 바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성영웅

지금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은,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교용지매입비지방자치단체전출축구결의문채택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학교용지매입비지방자치단체부담금전출축구결의문채택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 즉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위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질서를 위하여 타인을 모독하거나 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등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영용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간곡한 마음으로 이 자

리에 섰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집행청에 대해 평소 따뜻한 성원의 표시도 살갑게 해오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결연한 심정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일선의 선생님들은 신문을 펼쳐 보기가 겁난다고들 하십니다.

“충북교육계, 바람잘 날 없다” “지역교육계 내우외환 몸살” “잇단 악재... 굶판이라도 벌여야 하나” “더위 먹었나, 충북교육계...”

주먹만한 꺼먹글씨의 헤드라인들에 무거운 심정을 거두기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학교현장은 뒤숭숭하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불안과 염려의 시선을 떨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 아마도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은 더욱 곤혹스러우실 듯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우리 충북교육의 실상이고 충북교육계의 현주소입니까?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절대다수의 학교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교수-학습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10개월 동안 살펴본 충북교육의 실상은 그렇게 평가받기에는 억

울할 만큼 훨씬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 교육감 중 가장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될 만한 교육감님 취임 이래 실무 단위의 창발력들이 능동적으로 가동되면서 거양되는 교육성과들도 그 어느 시절보다 높다는 것이 통계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금 이것들이 다 가려질 만큼 연일 갈등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갈등은 크거나 양상이 다를 뿐 어디에나 상존합니다. 또 갈등이 속으로 품지 않고 터져 나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이 살이 있다는 반증도 됩니다.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소될 갈등도 외부로 비화되고, 원만하게 해결될 문제도 옅히고 설켜 수습 불능의 수렁으로 빠져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시스템의 작동 불능, 또는 부재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갈등들이 유독 우리 도에서 표면화되는 일이 잦은 것은 전적으로 지도 감독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무엇보다 집행청 실무 단위의 현장 대응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병이 나거나 불

이 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응급환자나 화재신고를 받고서도 그냥 스스로 낮고 알아서 끄라고 몽기적거리는 병원이나 소방서는 도대체 무얼 하려고 있는 곳인가 하는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갈등 사안만큼 교육청의 역할이 곧장 드러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습니다.

작금에 큰 회오리로 비화된 거의 모든 사안들이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만 있었다라도 초기에 해소될 수 있었을 사소한 요인들이 때를 놓쳐 골이 깊어진 경우들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갈등사안들에서 교육청의 대응은 거의가 ‘뒷북 대응’이거나 ‘헛다리 대응’, ‘부채질 대응’ 일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자체 해결을 기다린답시고 미루다가 사건을 키운 ‘늦장·뒷북 대응’들이고 마지못한 듯이 개입을 하고서도 갈등의 본질을 잘못 짚어서 더 꼬이게 만든 ‘헛다리 대응’ 또는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든 ‘부채질 대응’들이 태반입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 중재나 조정을 해서 해소된 예가 있거나 한지 눈을 씻고라도 찾아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청의 위임전결규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요 민원이나 갈등 사안은 전결 단위에 상관없이 교육감 부교육감이 직접 챙겨볼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규정에 떠밀리거나 매이고 현장 갈등들을 일일이 윗선에서 챙기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실무선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사안이 꼬일 대로 꼬인 뒤에야 보고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무엇보다 실무 단위 대응력 강화가 긴요하고 시급한 것 아닌가요?

이대로는 결국 모든 책임이 교육감에게 고 돌려져서 모든 원망을 교육감이 뒤집어쓰게 되고 말 상황 아닙니까?

저도 2년 전 현교육감님의 당선을 받으면서 충북교육사상 가장 후덕하고 민주적이며 개혁적인 교육감님이 교육가족들의 화합을 이끌고 모든 동력들을 묶어내어서 충북교육의 기틀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리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대는 아직도 유효하고 훌륭하신 인품과 민주성, 개혁성에 대한 신뢰도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계 일각에서는 그 기대가 처음 같지 않다는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보좌 단위의 뼈아픈 자성도 나와야 하고 분연히 뼈를 깎는 모습들도 보여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현장 갈등 사안들에 팔을 걷어 부치고 당장 달려나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현장에 나가서는 수사하듯, 문초하듯, 심판하듯 할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몇 날 며칠이고 관련자들을 찾아 만나서 무릎을 맞대고 귀를 열고 고충을 듣고 고민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기용 교육감 시대가 열린 시대적 요청이 무엇이었습니다.

바로 교육현장의 권위주의가 촉발한 어둡고 혼란스런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 리더십을 대안으로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마련된 지표가 바로 교육감님께서 제시하신 관심·사랑·화합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과도기적 혼란의 여진이 따르는 가운데서도 그 지표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충북교육 현장에 민주적인 기풍이 더욱 진작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수장의 리더십 또한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것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러한 때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주체들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 기대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민주성과
(11시 36분 폐회)
개혁성을 뚜렷이 강화하셔서 일선 관리자
들의 귀감이 되시는 것은 물론, 구시대적
갈등을 유발하는 권위주의적 구습들에 대
해서는 과감히 징치하는 결단과 결행력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도 교육감님께서 조직과
인력을 더욱 탄탄히 장악하시고 민주적
리더십의 권위를 굳건히 하여서 더욱 많
은 교육주체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기
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행청 일꾼들도 가일층 분발하
여 직권을 위임해 주신 교육주체들과 수
장에 대한 복무를 넘어서 역사적 소임을
다하시기를 기원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축구를 드립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
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따가운 고
언을 경청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자유발언에 갈음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05회 충청북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웅,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8명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총무과장 신건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 부 록

- ▶ 심사보고서(별첨 4)
- ▶ 학교용지매입비지방자치단체부담금전출촉구결의문채택의건(별첨 5)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7. 7. .

의 장 성 영 용 成 永龍

위 원 서 수 웅 서 수웅

위 원 이 상 일 李 相一

의사국장 박 경 석 朴 敬石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7. 6. 25. ~ 6. 27.(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월 25일(월) 11:00	☐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7. 6. 25. ~ 6. 27. (3일간) 2.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산 회 ☐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6월 26일(화)	☐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6월 27일(수) 11:00	[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산 회 ☐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205-1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6월 일 (제 205 회)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6월 15일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205-1
----------	-------

제출연월일 : 2007년 6월 1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골자

-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 1,373,219,504,900원
 - 세출결산액 : 1,253,992,123,680원
 - 세계잉여금 : 119,227,381,220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9,255,590,760원,
국고보조금 잔액 166,694,000원, 지방채상환 8,903,211,84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0,901,884,620원임.
- ☐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별책
- ☐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 별책
- ☐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
- ☐ 참고사항
 -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 : 별책

(별첨 3)

의안번호	제 205-2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6월 일 (제 205 회)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6월 14일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205-2
----------	-------

제출연월일 : 2007년 6월 1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지출건수 : 3건
- 지출결정액 : 1,397,229,000원
- 지출액 : 1,216,775,150원
- 다음연도이월액 : 19,436,000원
- 잔액 : 161,017,850원

□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액	비고
태풍피해 복구비	'06. 8.18.	10,000,000	10,000,000	0	0	보은중
호우피해 복구비	'06. 8.18.	1,337,229,000	1,156,775,150	19,436,000	161,017,850	학생종합수련 원외 9개 기관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충북 전시관 전시대행 용역비	'06. 9.30.	50,000,000	50,000,000	0	0	전시관 전시대 행 용역비
계		1,397,229,000	1,216,775,150	19,436,000	161,017,850	

□ 예비비 사용명세서 : 붙임

[붙임]

2006년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액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학교 교육	초등 학교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관리	학교시설 사업비	학교회계 전출금	3,100,000	3,100,000	0	0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311,713,000	277,218,480	0	34,494,520
	중학교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관리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10,000,000	10,000,000	0	0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92,826,000	82,020,860	0	10,805,140
	고등 학교	학교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사업비	사학 지원비	303,480,000	270,007,480	0	33,472,520
	특수 학교	학교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사업비	사학 지원비	52,500,000	48,633,000	0	3,867,000
교육 행정	본청	본청운영	홍보활동 지원	용역비	용역비	50,000,000	50,000,000	0	0
	지역 교육청	지역교육청 시설	지역교육청 시설	교육 사업비	시설비	10,000,000	9,300,000	0	700,000
	교육 지원 기관	교육지원 기관시설	교육지원 기관시설	기타시설 사업비	시설비	511,060,000	414,169,130	19,436,000	77,454,870
				기타시설 사업비	자산 취득비	52,550,000	52,326,200	0	223,800
합계						1,397,229,000	1,216,775,150	19,436,000	161,017,850

(별첨 4)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7. 6.27. 11:00)

심 사 보 고 서

1.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6월 25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7년 6월 25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7년 6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 1,373,219,504,900원,
 - 세출결산액 : 1,253,992,123,680원,
 - 세계잉여금 : 119,227,381,220원이며,

○ 세계잉여금 중

- 다음연도 이월액 29,255,590,760원,
- 국고보조금 잔액 166,694,000원,
- 지방채상환 8,903,211,840원
- 순세계 잉여금은 80,901,884,620원임.

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붙임 참고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세입·세출 결산 개요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2006년	1,260,990,813	1,372,059,446	1,373,219,505	1,253,992,124
2005년	1,244,853,173	1,292,368,842	1,270,448,464	1,128,548,417
증감(%)	16,137,640(1.2%)	79,690,604(6.2%)	102,771,041(8.1%)	125,443,707(11.1%)

연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	지방채 상환
2006년	119,227,381	9,701,500	19,554,090	166,694	80,901,884	8,903,212
2005년	141,900,048	104,499,069	6,569,562	0	30,831,418	0
증감(%)	△22,672,667 (△15.9%)	△94,797,569 (△90.7%)	12,984,528 (197.6%)	166,694	50,070,466 (162.4%)	8,903,212

-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 3,720억 5,9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6.2%가 증가되었으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1%에 해당하는 1조 3,732억 1,950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4%에 해당되는 1조 2,539억 9,212만원이고,
 - 세계잉여금은 1,192억 2,738만원이 발생하였음.
- 세계잉여금 1,192억 2,738만원 중 97억 1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95억 5,409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잔액 1억 6,66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09억 188만원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89억 321만원은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였음.

나. 세입결산

-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A)	이체등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징수 결정액 (D)	수납액 (E)	불 납 결손액 (F)	미수납액 (G=D-E-F)	수납율(%)	
								E/C	E/D
2006년	1,260,990,813	111,068,633	1,372,059,446	1,373,978,572	1,373,219,505	12,645	746,422	100.1	99.9
2005년	1,244,853,173	47,515,669	1,292,368,842	1,279,879,480	1,270,448,464	9,955	9,421,060	98.3	99.2
증감 (%)	16,137,640 (1.2%)	63,552,964 (133.7%)	79,690,604 (6.2%)	94,099,092 (7.3%)	102,771,041 (8.1%)	2,690 (27.0%)	△8,674,638 (△92.0%)	1.8	0.7

-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3,732억 1,950만원으로
- 세입징수결정액 1조 3,739억 7,857만원 대비 99.9%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1조 3,720억 5,944만원 대비 100.1%를 수납하였음.
- 징수결정액 중 1,264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0.1%인 7억 4,642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세입 관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관 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납 결손액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수납율(%) ③/①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57,509,920	1,057,509,920	1,057,509,920	0	0	100.0
2 국고지원금	9,601,063	9,504,922	9,504,922	0	0	99.0
국가부담수입 소계	1,067,110,983	1,067,014,842	1,067,014,842	0	0	99.9
3 법정전입금	111,076,107	111,076,107	111,076,107	0	0	100.0
4 비법정전입금	1,439,280	1,439,280	721,730	0	717,550	50.2
일반회계부담수입 소계	112,515,387	112,515,387	111,797,837	0	717,550	99.3
5 재산수입	4,587,167	4,904,906	4,879,518	0	25,389	106.4
6 입학금및수업료	27,282,640	28,384,108	28,376,005	6,498	1,604	104.0
7 사용료및수수료	1,669,936	1,814,996	1,814,996	0	0	108.7
8 잡수입	6,119,971	6,783,105	6,775,079	6,147	1,879	110.7
9 이월금	141,900,050	141,900,048	141,900,048	0	0	100.0
10 지방교육채	9,056,000	8,902,785	8,902,785	0	0	98.3
11 주민(기관)부담금	483,088	483,088	483,088	0	0	100.0
12 기타지원금	1,334,224	1,275,307	1,275,307	0	0	95.6
자체수입기타 소계	192,433,076	194,448,343	194,406,826	0	28,872	101
합 계	1,372,059,446	1,373,978,572	1,373,219,505	12,645	746,422	100.1

- 세입 관별 결산액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575억 992만원, 국고지원금 95억 492만원 등 국가 부담수입이 1조 670억 1,484만원
- 법정전입금 1,110억 7,610만원, 비법정전입금 7억 2,173만원 등 일반회계부담금이 1,117억 9,783만원
- 재산수입 48억 7,951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283억 7,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18억 1,499만원, 잡수입 67억 7,507만원, 이월금 1,419억 4만원, 지방교육채 89억 278만원, 주민(기관등)부담금 4억 8,308만원, 기타지원금 12억 7,530만원 등 자체수입 기타가 1,944억 682만원임.

○ 세입재원별 결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2005년도	증감액	증감율	비고
국가부담 수 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57,509,920	1,044,987,906	12,522,014	1.2%	
	국고지원금	9,504,922	4,237,668	5,267,254	124.2%	
소계		1,067,014,842	1,049,225,574	17,789,268	1.7%	77.7%
일반회계 부 담 금	법정전입금	111,076,107	112,804,085	△1,727,978	△1.5%	
	비법정전입금	721,730	394,913	326,817	82.7%	
소계		111,797,837	113,198,998	△1,401,161	△1.2%	8.1%
자체수입	재산수입	4,879,518	6,368,975	△1,489,457	△23.3%	
	입학금및수업료	28,376,005	27,614,275	761,730	2.7%	
	사용료및수수료	1,814,996	1,426,403	388,593	27.2%	
	접수입	6,775,079	7,026,360	△251,281	△3.6%	
	이월금	141,900,048	64,835,512	77,064,536	118.8%	
	지방교육채	8,902,785	0	8,902,785	100%	
	주민(기관등)부담금	483,088	422,573	60,515	14.3%	
	기타지원금	1,275,307	329,794	945,513	286.6%	
소계		194,406,826	108,023,892	86,382,934	79.9%	14.2%
합계		1,373,219,505	1,270,448,464	102,771,041	8.1%	100%

- 세입결산액 1조 3,732억 1,950만원의 재원구성별 내역을 보면 의존수입이 85.8%, 자체수입이 14.2%를 차지함
- 의존수입 중 전체 세입결산액의 77.7%를 차지하는 국가부담수입은 1조 670억 1,484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671억 1,098만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 전체 세입결산액의 8.1%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부담금은 1,117억 9,783만원으로 예산현액 1,125억 1,538만원 대비 99.3%를 수납하였으며,
- 자체수입은 1,944억 682만원이며, 예산현액 1,924억 3,307만원 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 결산액의 14.2%를 구성하고 있음.

○ 불납결손 처분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불 납 결손액	비 고
관	항	목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업료 수입	6,498	자퇴 등 제적학생 수업료
잡 수 입	과년도수입	수업료수입	297	자퇴학생 수업료
잡 수 입	과년도수입	기타수입	5,850	재천 봉양초 봉남분교 미수납 임대료
합 계			12,645	

- 2006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1,264만 5천원으로 2006년도 자퇴 등 제적학생 수업료 수입 649만 8천원과 과년도 수업료 29만 7천원, 과년도 미수납 재산 임대료 585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미수납액	비 고
관	항	목		
비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17,550	
재산수입	재산임대수입	대 가 료	25,389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업료수입	1,604	
잡 수 입	잡 수 입	잡 수 입	1,879	
합 계			746,422	

- 2006년도 미수납액은 7억 4,642만 2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7억 1,755만원으로 음성군의 생극초다목적교실 신축 지원금 3억원 및 금왕도서관 열람실 증축지원금 1억 3,755만원과 옥천군의 삼양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지원금 2억 8,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충주 및 보은 지역의 폐교임대료 2,538만 9천원, 수업료 160만 4천원, 잡수입 187만 9천원이 미수납됨.

다. 세출결산

○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A)	예산 결정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연도이월액(E)			불용액 (F=C-D-E)	
					명시	사고	계	불용액	F/C
2006년	1,260,990,813	111,068,633	1,372,059,446	1,253,992,124	9,701,500	19,554,090	29,255,590	88,811,732	6.47
2005년	1,244,853,173	47,515,669	1,292,368,842	1,128,548,417	104,499,069	6,569,562	111,068,631	52,751,794	4.08
증감 (%)	16,137,640 (1.2%)	63,552,964 (133.7%)	79,690,604 (6.2%)	125,443,707 (11.1%)	△94,797,569 (△90.7%)	12,984,528 (197.6%)	△81,813,041 (△74.3%)	36,059,938 (68.3%)	2.39

-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2,609억 9,08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10억 6,863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1조 3,720억 5,94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2%가 증가하였으며,
-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 보다 11.1%가 증가한 1조 2,539억 9,212만원으로 91.4%를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전년도 8.6%)인 292억 5,559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97억 150만원, 사고이월액이 195억 5,409만원이며,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47%(전년도 4.08%)인 888억 1,173만원이 발생함.

○ 세출 관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관 별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율(%) ④/①
1. 유치원	17,352,172	16,769,888	0	582,284	3.4
2. 초등학교	179,237,888	161,126,192	4,552,594	13,559,102	7.6
3. 중학교	128,646,978	114,366,550	6,814,283	7,466,145	5.8
4. 고등학교	128,455,235	121,677,445	4,209,500	2,568,290	2.0
5. 특수학교	18,317,676	17,771,092	0	546,584	3.0

관 별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율(%) ④/①
6. 기타학교	358,156	358,156	0	0	0
7. 평생교육	3,445,038	3,377,968	0	67,070	1.9
8. 급여관리	768,052,556	760,237,439	0	7,815,117	1.0
9. 교육위원회	616,222	484,405	110,000	21,817	3.5
10. 선거관리	174,509	174,508	0	1	0
11. 본청	21,144,262	18,848,139	664,700	1,631,423	7.7
12. 지역교육청	14,953,995	14,497,522	0	456,473	3.1
13. 교육지원기관	27,508,734	13,947,653	12,904,513	656,568	2.4
14. 지방채상환	10,373,662	10,355,167	0	18,495	0.2
15. 예비비	53,422,363	0	0	53,422,363	100.0
합 계	1,372,059,446	1,253,992,124	29,255,590	88,811,732	6.5

-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지출액 4,320억 6,932만원
-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33억 7,796만원
-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 7,602억 3,743만원
- 교육위원회 지출액 4억 8,440만원
- 선거관리 지출액 1억 7,450만원
- 교육청 및 지원기관 지출액 472억 9,331만원
- 그리고, 지방채상환 지출액 103억 5,516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비 고
명시이월	47	9,701,500	0	9,701,500	9,701,500	0	
사고이월	5	32,462,256	10,930,164	21,532,092	19,554,090	1,978,002	
합 계	52	42,163,756	10,930,164	31,233,592	29,255,590	1,978,002	

- 다음연도 이월액은 292억 5,559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47건에 97억 150만원, 사고이월이 5건에 195억 5,409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규모면에서 명시이월은 90.7%가 감소되고, 사고이월은 197.6%가 증가됨
- 명시이월액 내역은
 - 초등학교가 주성초 냉난방개선 외 16건에 28억 7,029만원,
 - 중학교가 남성중 운동부용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외 13건에 14억 3,555만원,
 - 고등학교가 청원고 기숙사 신축 외 11건 42억 950만원,
 -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휴게숙소 임차비용 1억 1,000만원,
 - 본청이 명덕초 외 23교의 다목적교실 및 교사개축 기본설계비 6억 6,470만원,
 - 교육지원기관이 영동도서관 냉난방 개선 외 1건 4억 1,145만원임
- 사고이월액 내역은
 - 초등학교가 감곡초 다목적교실 신축 외 1건 16억 8,229만원,
 - 중학교가 송절중 신축 53억 7,873만원,
 - 교육지원기관이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 외 1건 124억 9,306만원임
-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사업임

○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천원)

성 질 별	예산현액(A)	불용액(B)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율(B/A)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예산 절감	지 급 사 유 미발생	집행 잔액	기타	
1. 인건비	681,802,806	7,496,579	0	7,283,044	0	7,972	205,563	0	1.10
2. 물건비	41,628,140	1,951,397	8,080	165,384	49,013	25,211	1,703,709	0	4.69
3. 경상이전	367,853,034	6,427,181	13,680	0	110,032	203,730	6,099,739	0	1.75
4. 자본지출경비	213,689,432	19,514,211	3,782,623	0	490,906	3,374	15,237,308	0	9.13

성 질 별	예산현액(A)	불용액(B)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 율 (B/A)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예산 절감	지 급 사 유 미발생	집행 잔액	기타	
5. 융자금및대출금	0	0	0	0	0	0	0	0	0.00
6. 보전자출	10,204,937	0	0	0	0	0	0	0	0.00
7.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3,458,734	1	0	0	0	0	1	0	0.00
8. 예비비및기타	53,422,363	53,422,363	0	0	0	0	0	53,422,363	100.0
합 계	1,372,059,446	88,811,732	3,804,383	7,448,428	649,951	240,287	23,246,320	53,422,363	6.47

- 불용액 발생 총 규모는 888억 1,173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6.47%(전년도 4.08%)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전년도 불용액 527억 5,179만원에 비해 2.39%인 360억 5,993만원이 증가됨

- 불용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가 38억 438만원(4.3%),
-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이 74억 4,842만원(8.4%),
- 예산절감이 6억 4,995만원(0.7%),
- 지급사유 미발생이 2억 4,028만원(0.3%),
- 집행잔액이 232억 4,632만원(26.2%),
- 기타가 534억 2,236만원(60.1%) 임.

○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이체

(단위 : 천원)

건수	이 체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7	79,390	79,390	2006. 3. 1자 혁신기획담당 및 법무담당 가구 개편

- 예산의 전용

(단위 : 천원)

건수	전 용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2	85,686	85,686	○ 영재교육자료 시·도 공동개발 취소로 인한 자체개발에 따른 전용 12,500천원 ○ 지방채 전액 상환에 따른 전용 73,186천원

-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나 예산의 이체는 혁신기획담당(기획관리과⇒혁신복지담당관실) 및 법무담당(총무과⇒기획관리과) 업무 소관 부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7,939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영재교육자료 시·도 공동개발 취소로 인한 자체개발비 전용 1,25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비 전용 7,318만원임

○ 채무부담행위

(단위 : 천원)

사업명	채무부담 행위승인액	채무부담 행 위 액	채무부담 행위사유	상환조건	비 고
장전초외 2교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31,591,000	0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사업추진(BTL방식)	20년간 원리금 상환 (5년간 국고채금리가산율)	2005년
송절초외 2교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29,348,000	0	"	"	2005년
석남초외 6교 신·증·개축	29,204,610	0	"	"	2006년
청주성신학교외 16교 신·증·개축	28,348,132	0	"	"	2006년
서청초외 28교 신·증·개축	75,490,447	0	"	"	2006년
합 계	193,982,189	0			

-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사업추진(BTL 방식)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액은 2005년도 609억 3,900만원 대비 218.3%인 1,330억 4,318만원이 증가되어 총 1,939억 8,218만원으로 20년간 원리금 상환임

- 사업별 채무부담행위 승인액 내역을 보면, 2005년도 사업으로 장전초외 2교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로 315억 9,100만원, 송절초외 2교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로 293억 4,800만원이고, 2006년도 사업으로 석남초외 6교 신·증·개축비로 292억 461만원, 청주성신학교외 16교 신·증·개축비로 283억 4,813만원, 서청초외 28교 신·증·개축비로 754억 9,044만원임

○ 채권 및 채무관리 현황

- 채권현재액

(단위 : 천원)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증(발생액)	감(소멸액)		
미수입입대료 (재산입대료)	23,359	△23,359	0	23,359	0	
미수수익자 부담수입(수업료)	1,484	△1,484	0	1,484	0	
미수경상이전 수입(소송비용외)	5,190	△3,310	0	3,310	1,880	
보증금 (전세권)	292,000	△30,000	162,000	192,000	262,000	
대여금 (대여학자금)	40,673,615	1,300,892	7,589,710	6,288,818	41,974,507	
합 계	40,995,648	1,242,739	7,751,710	6,508,971	42,238,387	

- 채권은 대부분이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06년도에 77억 5,171만원이 발생하고, 65억 897만원이 소멸되어 전년도말 현재액 409억 9,564만원 대비 3.0%인 12억 4,273만원이 증가하여 총 422억 3,838만원임.

- 채무현재액

(단위 : 천원)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 입 금	10,204,937	△10,204,937	8,902,785	19,107,722	0	

- 채무현재액은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사업비 부족에 따른 차입금 89억 278만원이 증가하고 차입금 191억 772만원 전액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의 채무액은 없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제고되었다고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

- 공유재산현황

(단위 : 천원)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증	감		
행정재산	2,673,164,328	92,198,862	103,088,100	10,889,238	2,765,363,190	
보존재산	2,771	90,000	90,000	0	92,771	
잡종재산	38,360,056	△2,379,794	5,538,412	7,918,208	35,980,261	
합 계	2,711,527,155	89,909,066	108,716,512	18,807,446	2,801,436,221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2조 7,115억 2,715만원 대비 3.3%인 899억 906만원이 증가한 2조 8,014억 3,622만원으로 증액의 대부분이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신규 취득과 증·개축에서 기인된 것으로,
-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조 7,653억 6,432만원으로 98.7%를 차지하고, 잡종재산이 359억 8,026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존재산은 9,277만원으로 0.0%를 차지하고 있음.

- 물품관리 현황

(단위 :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증	감		
115,563,393	122,102	14,553,322	14,431,220	115,685,495	

- 물품관리는 전년도말 현재액 1,155억 6,339만원 대비 0.1%인 1억 2,210만원이 증가한 1,156억 8,54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운반·건설기계·차량, 산업기계, 기타잡기기의 신규구입 및 처분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음.

5. 종합의견

-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액 현황, 불용액 현황,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채무부담행위, 채권 및 채무관리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세입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100.1%의 징수율과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92%가 감소되어 징수 및 수납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 세입결산액 재원구성별 내역을 보면 의존수입이 85.8%, 자체수입이 14.2%로, 자체수입이 전년도 8.5%에서 5.75%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이월금 및 지방채 차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교육경비 보조 조례의 제정 및 지원액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교육경비 확충 방안 강구와 수입재원 발굴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세입예산 편성 시 모든 세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정치이므로 반드시 정확할 수는 없으나, 그 추정액은 세출예산 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산액과의 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일부 세입 과목의 경우에는 과도한 편차를 보여 향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888억 1,1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억 5,993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6.47%로써 전년도(4.08%)에 비하여 2.39% 증가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금액은 적으나 초등교육과 학예행사 지원 여비 외 12건이 전액 불용되고,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 사업이

- 65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이 예견될 경우 추경 시 조정 등을 통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다음연도 이월액은 292억 5,559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47건에 97억 150만원, 사고이월액이 5건 195억 5,409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업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할 수 없을 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서 이월된 금액은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연초부터 집행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또 다시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 아울러,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 추진 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발생 등을 이월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도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06년도 12월 말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부한 하반기 특별교부금 현안 사업비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월한 바,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정확한 재원을 판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등 늘어가는 교육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5.9%가 감소된 바, 이는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이월비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발생한 바, 예산을 보다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 채무부담행위액인 민간투자사업추진(BTL) 사업은 20년간 민간투자비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향후 20년간 학교 유지가 불투명한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수용계획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6월 25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7년 6월 25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7년 6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출건수 : 3건
- 지출결정액 : 1,397,229,000원
- 지출액 : 1,216,775,150원
- 다음년도이월액 : 19,436,000원
- 잔액 : 161,017,850원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액	비고
태풍피해 복구비	'06. 8.18.	10,000,000	10,000,000	0	0	보은중
호우피해 복구비	'06. 8.18.	1,337,229,000	1,156,775,150	19,436,000	161,017,850	학생종합수련 원외 9개 기관
방과후 학교 폐쇄 특별 전시관 전시대행 용역비	'06. 9.30.	50,000,000	50,000,000	0	0	전시관 전시대 행 용역비
계		1,397,229,000	1,216,775,150	19,436,000	161,017,850	

나. 예비비사용 명세서

(단위 : 원)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액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학교 교육	초등 학교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관리	학교시설 사업비	학교회계 전출금	3,100,000	3,100,000	0	0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311,713,000	277,218,480	0	34,494,520
	중학교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관리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10,000,000	10,000,000	0	0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92,826,000	82,020,860	0	10,805,140
	고등 학교	학교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사업비	사학 지원비	303,480,000	270,007,480	0	33,472,520
	특수 학교	학교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사업비	사학 지원비	52,500,000	48,633,000	0	3,867,000
교육 행정	본청	본청운영	홍보활동 지	용역비	용역비	50,000,000	50,000,000	0	0
	지역 교육청	지역교육청 시설	지역교육청 시설	교육 사업비	시설비	10,000,000	9,300,000	0	700,000
	교육 지원 기관	교육지원 기관시설	교육지원 기관시설	가타시설 사업비	시설비	511,060,000	414,169,130	19,436,000	77,454,870
				가타시설 사업비	자산 취득비	52,550,000	52,326,200	0	223,800
합계						1,397,229,000	1,216,775,150	19,436,000	161,017,850

- 예비비 548억 1,959만원 중 2.5%인 13억 9,72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 2006년 8월 18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시설 피해를 입은 보은중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1,000만원,
- 2006년 7월 16~17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설피해를 입은 학생종합수련원 외 9개 기관 피해복구비 지원 11억 7,621만원,
- 2006년 9월 30일, 11월 15~18일까지 4일간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 교육개발원과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2006.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전시관 설치 및 운영경비 5,000만원 등 총 12억 3,621만원을 집행하고,
- 학생종합수련원 조경공사비 1,943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6,10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5. 종합의견

- 금번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각종 재해복구와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충북전시관 전시대행 용역 등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 다만,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충북전시관 전시대행 용역 사업비의 경우 교육부의 보조금 교부시기와 추경예산의 편성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비비 지출이었으나, 향후에는 교육부와 교부시기 조정 등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해야 할 사업이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7. 6. 27.

예산·결산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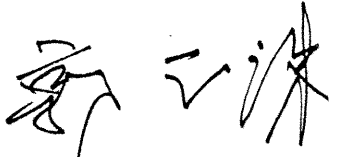
위원장

김 부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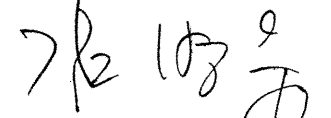
간 사

곽 정 수



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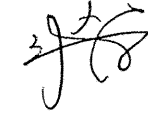
김 병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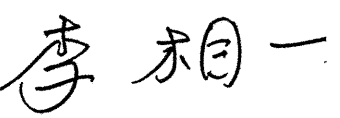
박 노 성



서 수 응



이 상 일



(별첨 5)

의안번호	제 205 - 3 호
의 결 년 월 일	2007. . . (제 회)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발 의 자	서수웅 교육위원외 6인
발의년월일	2007. 6. 22.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205-3
------------	-------

발의년월일 : 2007. 6. 22.

발 의 자 : 서수웅 교육위원외 6인

1. 주 문

○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담금 전출이 지연되고 있어 개발사업지역내 학교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뜻을 모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 50%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출하기를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학교용지매입비 50%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경비 중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적기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체가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하는 법정부담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등으로 부과·징수한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중 학교용지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즉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하나,

개발사업의 허가로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동안 학교 용지 매입비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향후 학교 신설 계획을 보류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역내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전 교육위원의 뜻을 모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학교용지 매입비 50%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출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3. 결의문(안) : 붙임과 같음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출 촉구 결의문(안)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담금 전출이 지연되고 있어 개발사업지역내 학교를 신설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므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학교용지매입비 50%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경비 중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적기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등으로 부과·징수한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중 학교용지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즉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한다.

개발사업의 허가로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향후 학교신설 계획을 보류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역내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는 전 교육위원의 뜻을 모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학교용지 매입비 50%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출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우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학교시설은 교육환경개선의 근간이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외면하지 말고 학교용지 매입비 50%를 교육청에 즉시 전출하라.
1. 전국시·도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학교용지 매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1. 정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조속히 전출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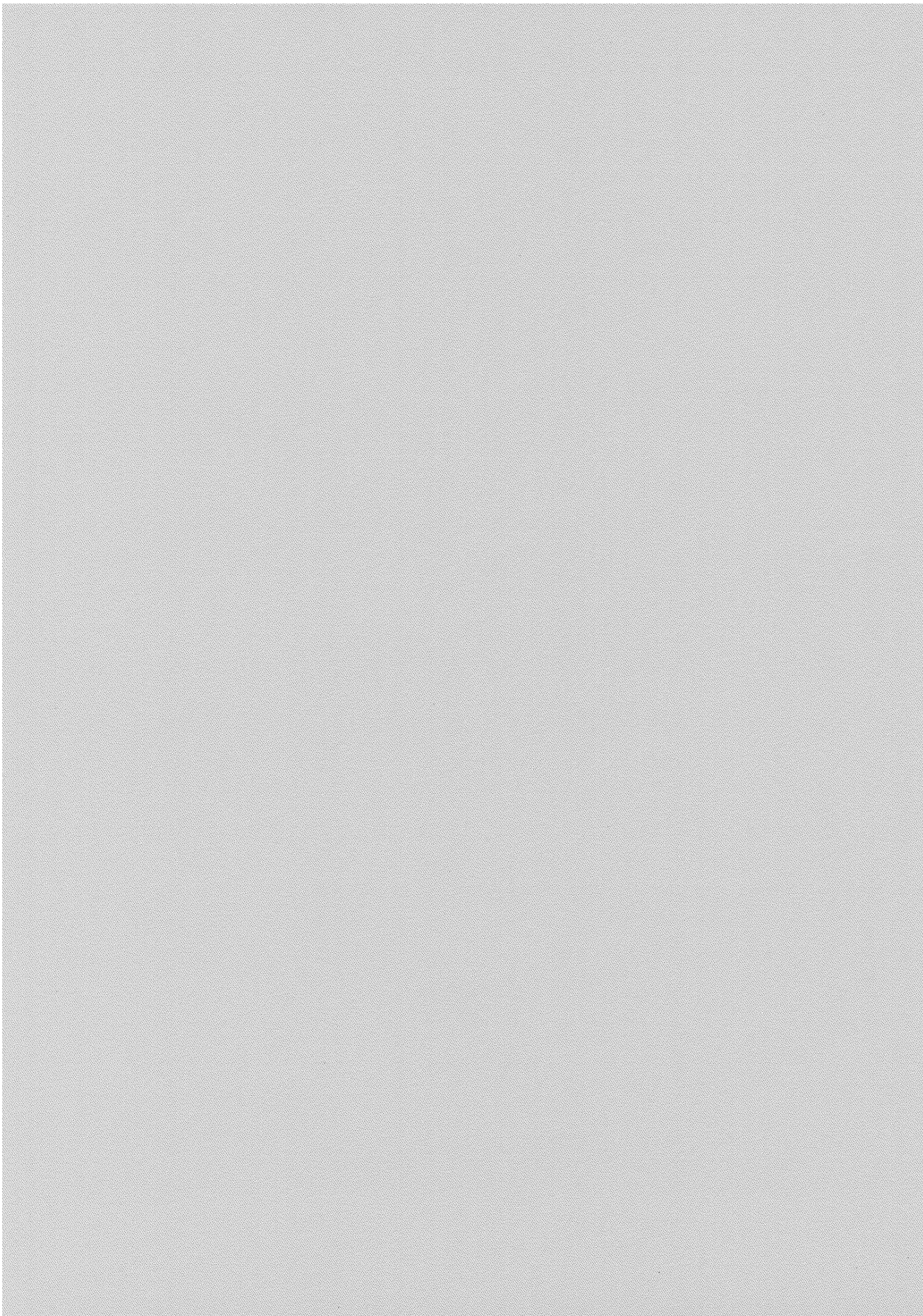
2007년 6월 27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第20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355
II .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359
III . 부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393

豫算・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6월 25일 (월요일) 11시 23분

議事日程 (제20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3분 개의)

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부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웅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뒤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부웅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05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곽정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곽정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정수 위원님이 추천되어서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곽정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수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곽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만한 소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25분)

● 위원장 김부웅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7분)

● 위원장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별첨 1)

(끝에 실음)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6일
10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2006년도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과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
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과 6월 26일 2일간으로 하
며,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
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1시 28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김부웅, 간사 곽정수,

위 원 김병우,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6월 26일 (화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20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예비비 지출조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위원장 김부웅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심사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안건별로 주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간략히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에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청 관계관계에서는 안건별로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설명은 나누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소책자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본회의 별책1)

지금까지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본회의 별책1)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부웅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1년간 쓴 재산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하

는데 양이 방대해서 사실은 깊은 곳까지
챙겨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보는 중에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결산개요에 보면 거
기 9쪽에 학력신장지원 거기에 보면 영재
교육자료 시·도 공동개발 취소로 인해
가지고 자체 개발에 따른 전용 그래서
1,250만원이 2006년 12월 29일 날짜로다
가 자체 개발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이라고 그러면 시기적
으로 연도 말이 되어서 과연 그때 전용이
되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시·도 공동
개발이 취소가 된 그 사유를 혹시 안다면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영재교육에 대한 제반계획, 중앙계획은
중앙의 교육부에서 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전국으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도별로 또 연도별로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되었고, 처음
에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중
간 시행과정에서 다른 목표로 영재교육개
발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다른 목표로
전용이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또 3월부터 12월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

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개발연구진이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 때문
에 취소가 되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이렇
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간사 곽정수

그러면 12월 29일날 그 전용일자가 2차
추경에서 승인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러
면 이게 이렇게 용도가 개발이 중지될 결
로 예측을 하고 그 사업을 계속 해왔던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계속 해왔던 사업이
기 때문에 전용을 한 건지 아니면 전용을
하고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한 건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실제로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목표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그 시행에 대
한 목표에 맞추어서 12월에 전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목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간사 곽정수

충실히 잘 났다는 얘기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네

● 간사 곽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개요 20쪽에 보면 거기 공유
재산현황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
산 이렇게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보

존재산이다라고 그러는 것이 용어상 이게 문화재나 뭐 예술품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의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존재산은 주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재산을 저희들이 보통 보존재산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 간사곽정수

근데 여기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270만원이었다가 당해 연도 증감액이 9,200만원 그런데 요 재산가치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재산은 죽향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내용인데 죽향초등학교 교사가 2003년 6월에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걸 갖다가 보존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2004년 12월 달에 이렇게 변경을 했고, 2006년 10월에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옥천군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9,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지붕보수라든가 외부 벽체 균열을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쪽 공사를 합니다.

보수공사로 인해 가지고 재산가치가 증가를 해 가지고 보존재산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 간사곽정수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거기 25쪽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예산집행 부적정 이렇게 아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거기서 지적한 걸 다시 반복할 일은 아닙니다만 감곡초 다목적교실 신축에 1억 5,000만원이 예산에서 계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거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1억 5,000만원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생곡초나 감곡초 또 그런 신축사업비 다 목적교실이죠, 그런 거에 4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초단체전입금이 미수납되어서 자금없는 사업을 사고이월한 결과를 가져왔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금년도에 이게 지원이 된 것인지 또 안됐다고 그러면 그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1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에 누락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음성군청으로부터 교부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감곡초

등학교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곡초등학교에서 2006년 9월 달에 학교에서 3회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학교회계로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곡초등학교하고 금왕도서관 열람실 증축공사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조결정을 할 때 시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완료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결정조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바로 교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감사 박정수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완공되면 교부받는 그런 돈이라는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런 조건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 감사 박정수

알겠습니다.

결산서 720페이지, 72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이 96억 106만원이고 지출액이 93억 4,417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억 5,588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중 결산개요 1페이지에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에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이월처리된 금액이 1억 6,699만원, 기 반납액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비 96만원, 농산촌 순

회 및 복식수업수당 16만원 등 총 112만원이 제외하고 나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8,907만원이 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궁금하고 또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불용액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교부할 때 당초 교부 예정액에서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차액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감사 박정수

그러니까 애초에 준다고 했던 돈보다 9,600만원을 덜 받았다는 그런.....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습니다.

● 감사 박정수

그러니까 감액교부라는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사업이 조정된 게 아니고 실제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어떤 대상자 수가 줄었다든가 해 가지고 실제 사업에 집행한 금액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 간사 곽정수

그러면 조정이 되고도 그 사업이 목적 된 대로 수행이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간사 곽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저는 우선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쭙보고요,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일반론적인 질의를 이어서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결산서 중에서 세계잉여금이 1,192억 이렇게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요게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대로 반영이 된 거고, 기타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2007년도 예산 재원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체 세입 재원으로 포함해서 전체 예산에 포함을 한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예산 현액에 반영이 되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후에 추경에 반영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당초엔 예정 금액을 우선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근데 거기 89억 321만 1,840원이 세출 예산에 안넣고 지방채상환에 사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요것은 세출결산서 615쪽, 616쪽에 나오는 채무결산보고서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9억 321만원은 2006년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서 42억 2,778만 5,000원, 그 다음에 학교신설을 위해

서 46억 7,500만원 합해서 총 89억 278만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부담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상황이자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근거해 가지고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원리금을 지방재정법 52조에 적용해 가지고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입과 동시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거기에 이자를 일부 하루 금액이 42만 7,000원인데 이자를 함께 부담한 겁니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결산서 5쪽에 세입·세출결산총괄표에서 나오는 세계잉여금이 2005년도 대비하면 줄어든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보다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줄은 걸로 나오는데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거는 바로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제가 보니까 15.7%정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예산집행이 좀 마디게 많이 효율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고이월비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어떤지를 또 한번 봐주세요.

지금 답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좀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예산집행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에 추정재원으로나 이렇게 세입으로 잡기보다는 지방교육채 상황에 쓰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좀 감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719쪽에 불용액 중에 예비비가 534억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던데 제가 보니까 60.1%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전 해에 보니까 311억 여원이었던 예비비가 171.9%나 이렇게 늘어서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늘려서 잡았다가

결국 또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당초부터 예비비를 이렇게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2차 추경을 할 때 그 동안에 어떤 집행잔액이 남았다던가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예비비로 이렇게 돌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한 28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추경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입된 특별교부금, 또 작년에 저희들이 혁신평가를 받고 평가보상금 이런 것들이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이 한 21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717쪽에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폐교재산임대료가 2,538만원, 수업료가 160만 4,000여 원이 요렇게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616쪽에 채권 현재액을 보면 당해 연도에는 발생액이 없는 것으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717쪽에 나오는 미수납액이 616쪽 채권 현재액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2005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수업료 미납을 채권액으로 잡았던데 여기서는 이렇게 잡지 않은 이유가 뭐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은 작년도 2006년도에 미수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과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징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7년도 채권발생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 김병우 위원

2007년도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김병우 위원

결산서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원론적인 부분을 같이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매년 우리 위원회에 결산심의 때마다 감사위원으로 교육위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조례가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도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선임방법이라든가 절차를 보면 도의회 의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선임을 하다 보니까 매년 교육위원님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현재까지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도의회에 어떤 절차선임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여기서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저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에 125조에 관련 근거가 있고 동 시행령에 그 선임방식이 되어있으면서 그것을 조례로 또 위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빼보니까 방

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으로는 교육위원이 들어간다면 안된다는 건 없고 다만 지방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세무사나 회계사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일반회계 결산검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이 교육비 특별회계나 이렇게 결산검사 할 때 참여하면 되는 교육위원이 거기까지 이렇게 포함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아마 위촉대상에 두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은 타 시·도에서는 교육위원이 포함되는 예가 있죠?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교육위원이 포함된 시·도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없어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네

● 김병우 위원

작년 기록에는 보니까 경남하고 제주 같은 데는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나 하면 다시피 결산검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회계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들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현장 그런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들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과정에는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을 전임 위원님들도 가져왔던 것 같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심의도 그렇듯이 그냥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탁상 심의나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청에서야 사실은 교육위원들이 참여하든 않든 아쉬울 게 없겠지만 그리고 또 집행청에서 도쪽에다가 요구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도의회 의장한테 협조를 부탁하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많이 나오는 거기도 보면 교육경비확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서 27쪽에도 보면 거기 교육경

비보조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중요하게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라는 게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오는 교육경비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히 적게 들어오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는 보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교육경비보조조례가 아직 안된 시·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요, 현재 시세, 군세 수입이 2% 이내로 이렇게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 부분도 집행청만의 노력으로 관심으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청만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될 거라고 보고요.

올 초에 이 자료를 냈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서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담당과에 요청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요렇게 잘 만든 걸 진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사실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아주 눈이 번쩍 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부 세미나 같은데서 자료로 일부분 스캔해 가지고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받아 보니까 거기 몇 쪽입니까? 교육경비확보와 관련되는 부분에 21쪽에 시·군교육경비유치 현황에 금액 단위를 이렇게 정정을 하셨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입수를 해 가지고 활용한 파일 스캔은 이게 천원으로 단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인용했다가 아주 창피를 당했습니다.

총액 87억이 870 몇 만원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려 가지고 아주 얼굴이 화끈했는데 그 부분 그렇더라도, 요는 이제 잘 만든 자료들을 진작 진작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뒤로 발견하고 부탁을 하기 전에 좀 주셨더라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교육경비지원보조조례

라든지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1995년 '96년경에 대전시 유성구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하면서 기초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됐고 그것이 법 제정에 반영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또 비슷한 시기에 인천시에서 학교급식관련 조례가 됐다가 남동구청장이 대법에 제소를 해 가지고 대법에서 아주 유의미한 판결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 부분이 재 의결되어 가지고 무효 여부를 다투게 되었던 건데, 요때 그 판결내용이 학교급식실시와 관련되는 것은 광역지자체 사무고 급식시설과 관련되는 것은 기초단체 사무다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도 아마 서로 떠넘기기 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 12월 30일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될 때 광역지자체가 교육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전에는 광역은 도는 시·군이나 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비법정지원금을 주어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광역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직접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그렇게 마련됐다는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구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예산에 자기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도청에서 저희들이 도청예산 편성할 때 11억을 교육 예산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도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 전출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도청에서 자기들이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도 기초나 광역에서 이런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 전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절차를 띠게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까지는 그렇게.....

도청은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한테 전출해 줘 가지고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시·군은 시·군별로 별도 경비보조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지원을 해줍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럼 그 회계상 지금 도에서는 현재까지 법에 근거가 있던 없던 비법정전입금으로 이렇게 다루어 왔던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까지는 별도 지원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별 별도로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비법정전입금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죠.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관련 조례가 관련법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 교육경비 보조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비법정전입금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법정전입금은 아니고요, 비법정전입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에 기준은 법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도세의 몇%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총 금액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 비법정전입금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얼마큼 지원하느냐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법적으로 도세 몇%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진출해주면 저희들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종래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는 법정전입금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비법정전입금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조항을 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과연 그게 법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건지, 아니면 꼭 해야

만 되는 거하고 법에 근거가 있던 없던 임의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하는 건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전입금은 우리 같은 경우는 충북도 같은 경우는 도세 3.6%, 또 지방교육세 해 가지고 아예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가지고 그거는 어떤 회계연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입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비법정전입금은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뭘 얼마큼 주겠다 이렇게 정해진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법정전입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문제에 불과하지만 제가 그걸 왜 자꾸 여쭙 보느냐 하면 의문점이 자꾸 들어서 그런 건데요.

지금 교육경비보조조례 같은 것들을 보면 지원 규모 같은 것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한 규정을 두어 가지고 몇% 이내 그러니까 그게 최소 어떤 기준이 아니고, 상한 규정을 두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안해도 그만 하면 좋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념 중에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 저는 회계상 회계법이나 이런 데 그게 전문용어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원하고 보조하고는 제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원금은 주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에게 이렇게 하는 걸 지원금 이렇게 더러 많이 쓰던데, 제가 학교 있을 때 학운위 결산심의 할 때 얼핏 듣기로는 그것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원금이고, 기관에서 받은 것을 학교 단위가 그걸 보조금으로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받은 것은 지원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가닥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법적으로 보조금이다 지원금이다 해 가지고 명쾌하게 어떤 개

념 정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기관에 돈을 줄 때는 보조를 해준다는 용어를 많이 쓰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지원을 받는다 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사실 혼용되어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용어를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 김병우 위원

그게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상위법령에는 그것이 보조라는 명칭으로 쓰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 조례는 지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 회의 갔다 왔었는데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혼용이 되어도 좋은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오듯이 27쪽에 각 시·군별로 이제 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 12개 시·군중에서 7개 시·군이 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3개 시하고 청원, 진천 2개 군하고 여기는 나와있듯이 시·군세 수입의 2%범위 내로 이렇게 지원 규모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단양은 군세 수입의 5%범

위 내로 내라고 상당히 올려 잡아서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옥천은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정을 했다고 그러고, 영동은 요 자료에 보니까 8% 뭐 때문에 부결됐다고 나오던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말씀하신 대로 영동군 같은 경우는 8%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그걸 2% 이내니 이렇게 비율로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불과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옥천 같은 경우도 비율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 했는데요, 영동 같은 경우도 8%라고 해도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정하는 것보다는 비율로 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보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집행정에서는 8%를 명시했는데 의회에 서 부결한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근데 문제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쪽 검토를 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것이 조례를 지금 여기에서는 감사의견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는데,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지 반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조례안에 그 지원 규모가 있거나 없거나 결국은 그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런 법적 근거하고는 사실은 별 관련이 없더라고요, 이거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런 이유가 시행령인가요, 시행령이 아니라 관련 규정 대통령령인가에 보니까 그해 자체수입에 그 지자체의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까지 합친 자체수입에 규모가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아예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못 박아놨더라고요, 이건 일종의 강제 조항인데 제가 본 2004년 통계로는 전국 시·군의 15% 우리 도내에서는 보은이나 영동, 괴산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보조금 주면 안된다는데 걸려버린단 말이죠. 아무리 그런 규정이 있어도, 그

러면 2004년도에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들이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근황은 혹시 기초단체들 재정자립도나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법적 조례를 따지기 전에 당장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시점이란 말이에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아예 그걸 삭제하는 쪽으로 그래서 인건비 충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의지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게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범위를 2%로 할 거냐, 5%로 할 거냐, 8%로 할 거냐 그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교육경비지원조례도 가장 먼저 만들고 또 살림살이도 재정자립도도 높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금년에 기초단체들마다

지원율이 자기 세수입에 0.2% 내지 0.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2%가 5%가 상환규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성의표시에 불과하다 액수를 떠나서 이런 느낌이 들었고, 아까 우리도 금년도 지원액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인가요, 경기도, 서울 그 다음에 우리 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재정편을 고려하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아쉬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1억은 1조 7,000억 일반회계 예산액에 비하면 진짜 이거는 코끼리 비스킷 아닌가 하고 제가 거기서 굉장히 아주 서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한데 어쨌든 지자체의 투자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정말 다같이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정말 가서 촉구하고 재촉을 해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지자체하고 우리가 교육관련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앞서 실행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협력관제도가 그 하나라고 들었는데, 과연 파견교육협력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기능이 효과가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협력관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어떤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조율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쪽에 협조요청 할 내용이라든가 또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협력관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좀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작년에도 조례가 전국적으로 앞서 만들어지고 금년에 예산지원도 되고 하는 것이 성과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 사람을 거기다 보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성과가 있기를 바

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나 시·군에 집행청 내에 교육지원 전담조직 이라면 팀이라든지 계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 실태가 어떤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지금 지역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병우 위원

교육청이 아니고 시청이나 군청 같은데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시·군청에서 순수하게 보통교육 지원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별도 팀이나 계를 조직한 건 아니고요. 어떤 전체적으로 교육활동 초·중등교육을 포함해 가지고 주민교육이라든가 전체의 교육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팀이라든가 어떤 조직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초·중등교육을 위해서만 어떤 별도 팀을 구성했다던가 그런 건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속 가능성 청주시발전협의회 참여를 하다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평생지원 담당 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부 여기 일도 같이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경비지원조례까지 만들어진 만큼 그 경비지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려면 우리 교육청하고도 물론 협의를 해야겠지만 자체 팀이나 조직이 없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군들의 관련 그런 조직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조례로 만드느냐 안만드느냐 이런 것뿐 아니라 그런 관련 자치단체들의 그런 담당 지원 부서가 있는지 없으면 있도록 부탁을 할 일도 필요하지 않겠나 요런 생각도 들고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돌면서 그런 부분 봤습니다.

각 시·군하고 시·군교육청하고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요런 것들이 그런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런 테이블도 이제 좀더 활발하게 운영토록 해서 원활하게 서로 예산이나 사업들을 같이 논의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방기초자치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강화를 시키고,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

들과고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가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 집행청이나 우리나 같은 심정으로 노력을 힘을 모아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좀 넘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서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과 중등과장님은 행사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노성 위원

박노성 교육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

의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754억 9,000여 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렇게 보면은 이 원리금 상환은 2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작년도서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이제 개교하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매년 당초 협약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그런데 소규모 학교에도 체육관 내지는 다목적교실을 지어주는 사례가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열망과 동문이나 학부형들의 열망에 따라서 지어주는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읍 단위의 큰 학교도 사실은 체육관 같은 것이 없는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에 BTL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다목적교실을 건립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1,000명 이상의 학생수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강당이나 혹은 다목적교실이 없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학교수의 40%를 목표로 지금 정부기준이 40%입니다. 40% 기준으로 저희들이 다목적교실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생수가 적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다목적교실이 지어지고 있는 데요.

현재는 다목적교실이 물론 학생교육이 최우선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도 일부 활용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로부터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다목적교실을 짓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기준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설립하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교실 같은 것을 하면서 기공식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부합이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행정력의 낭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다목적교실을 기공을 할 때 지역 주민이나 인사들을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을 모아놓고 무더운 이 시기에 준공식을 거창하게 해야 되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물론 어떤 행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지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는 수십 년 동안의 어떤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장의 학부모들 요구도 많이 있었고 지역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전부들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가 그런데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박노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농촌지역에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 지역교육장이 업무를 수행해도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의 수장께서 참석을 하시고 물론 저희들도 참석을 합니다만

뒤에서 듣는 소리는 원성의 소리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하셔서 가지고서 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병우 위원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교육경비보조 및 지원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에 지원현황, 지원을 받은 현황을 혹시 통계로 잡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2007년도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노성 위원

예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1/4분기까지 80여 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 받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많이 받았네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11억 정도 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11억이라고 하는 돈은 아까 김병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 도 자치단체에 예산지원 요청을 한 실적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처음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요구할 때 한 4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40억 정도를 요구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11억으로 이렇게 결정이 금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금액이 적어 가지고 그쪽에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만, 우선 1차 년도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억을 받게 됐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금액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박노성 위원

지원조례 제정이 안된 군이 몇 군이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행정질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답변은 교육경비지원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노력을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교육청의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저희들이 교육경비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된 시·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해당 시·군에서는 어떤 특별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더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라든가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노성 위원

2006년도 지원액을 보면 제가 그 당시에 계셨던 기관장님들 머리를 쭉 떠올리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기관장님들께서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의 의장과의 유대가 강화된 이런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 어느 시·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관장님들이 기관장 회의에는 참석을 간단히 했다가 그냥 볼일 있다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작년도에 제가 들은 바

가 있고 금년도에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군의회 의장하고 군수하고 같이 어떤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도교육청에 혹은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줘도 우리는 전혀 생색이 나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거 검토를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부웅

박노성 위원님 오늘 회의 주제가 2006년도 회계결산이기 때문에 주제에서 많이 벗어난 질문은 가급적,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박노성 위원

예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고, 또 시·군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교육경비를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노성 위원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은 우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례도 제정하도록 조금 지도를 해주시고 지역교육청의 역할도 강화해주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

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면 1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잔액을 이렇게 보면 각 학교에 예산지원을 한 것이 거의 7,200만원씩 전부 이렇게 7,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은 편의에 의해서 요렇게 7,200만원씩 한 겁니까?

혹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7,2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학교에 운동부 샤워실이라든가 탈의실 설치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 박노성 위원

학생 수에 혹은 면적에 구애없이 7,200만원씩으로 이렇게 전부 예산이 지원됐는데, 앞으로 학교급수의 규모나 혹은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큰 학교에서 1억 5,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작은 학교는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편차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 그렇게 고려를 하겠는데요. 이

게 전체 학생을 위한 게 아니고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혹시 다시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성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박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신청.....

(서수웅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아주 세입·세출에 관한 원론적인 것 세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어차피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을 예산으로 계상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결산액과 딱 맞아떨어지리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측정액 자체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결산서 51쪽서부터 55쪽까지인데 국고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차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9,600만원이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쪽 있는데 다는 말씀을 안드리고 그렇게 편

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항목에 대한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지요.

특히 제가 꼭 궁금한 게 입학금 및 수업료가 그 차액이 11억이나 나는데 이것은 오히려 다른 항목보다 예측이 더 가능한 것 아닌가 싶어서, 혹시 세입예산을 할 때 너무 소홀했거나 미흡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거기에서 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도 7억 7,400만원인데 이자수입도 이렇게 예측이 많이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하고 최소한의 편차를 줄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측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액 대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데요.

우선 국고보조금관계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을 일부 드린바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사업이 어떤 교부할 때 당초에 요구했

던 사업이 인원수가 변경된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부 당초 예정액이 실제 교부될 때는 감액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 당초에 예측한 인원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차액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9,6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구요.

또 재산 어떤 매각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매각계약이 체결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시다만 계약이 체결이 안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예산에 추가로 이렇게 수요를 잡다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업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매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문계라든가 전문계라든가 구분을 해 가지고 감면율을 정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결손율 저희들은 1%로 잡고 있습니다만 결손율을 또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면율보다 초과되어서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1% 정도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언제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중 하나입니다. 예금이자 자금이 언제 얼마만큼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몇 년간의 평균 어떤 잔액을 따지고 평균 잔액에 대한 이율을 따진다던가 해 가지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밀도있게 검토를 해서 당초 예산 대비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쭙본 건데요.

학비 면에서는 감면율보다 초과 수납을 해서 그렇다 그러고요, 또 결손율보다도 예상했던 것보다 결손율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데 결손율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결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감면 쪽에 넣어 줘 가지고 좀 맞추는 게 좋겠다 수요공급 차원에서 볼 때 배우는

사람이 다 내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감면대상자가 아니면 내야지 이걸 결손율로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갑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저희들이 결손율을 잡는 거는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 또 퇴학이라든가 전학하거나 이런 학생을 발생하기 때문에

● 서수웅 위원

그런 걸 너무 많이 잡았나보네요.

앞으로 하여튼 다른 것도 그런데 특히 입학료 및 수업료 납부액의 편차가 너무 커서 예산을 한 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계 같은 경우에 감면율을 30%를 잡니다. 30%를 잡았는데 26.3%가 감면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4.7%가 더 수입이 됐는데, 저희들이 대상 학생 수에 따라서 수식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매년 전문계는 30%, 인문계는 1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물론 사람의 숫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년 뒤의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알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 다음에 725쪽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명시이월 집행된 것 중에서 운동초 이전을 비롯한 10개를 제가 살펴봤더니 명시이월사업을 집행한 후에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명시이월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남아있던데요. 그 불용액 남아있는 게 운동초등학교 건, 만수초 이전, 비봉초 신설 전부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그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뭔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당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그대로 전체 다 이월이 됩니다. 전체가 되는데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다 보면 거기에서 물량이 감소한다든가 또는 낙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불용

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 서수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송절중 신설하고 충청북도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시설사업은 다시 또 그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한 게 다시 사고이월 되는 것은 어떤 사유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절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보다 그 부지에 문화재 지표를 조사했습니다. 그 문화재보존 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기간 내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토지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또 사고이월로 이렇게.....

● 서수웅 위원

원인행위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거 아니에요, 그럼.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렇죠.

일단 매입이 된 상태에서 다시 공사기간 때문에 다시 또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 서수웅 위원

교육문화회관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기가 부족

해 가지고 어떤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공사중단 기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는 개교시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만,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좀더 이렇게 잘 짓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충분히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 서수웅 위원

납득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32쪽인데 지방재정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사고이월은 지금 말씀 나섰던 것과 같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할 수 없을 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이월하는데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각리초등학교 외 8건에 대해서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인가요?

어떻게 다 불용액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거의 각리초등학교 시설비, 무극중학교 시설비 이게 왜 불용액이 전부 남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고이월인 경우에도 불용액이 남는 거는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라든

가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계약 원인행위 금액이 넘어가니까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집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부대경우가 같이 이월됩니다. 부대경비는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부대경비에서 나오는 금액이군요.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근데 여기를 보면 시설비라고 불용액이 남으니까 이상하다 원인행위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남나?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그러니까 같이 본 공사에 따라서 주변 공사까지 같이 사고이월시키니까 집행하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사고이월된 것은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것이 원칙이겠네요, 그렇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네

● 서수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됐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이 본래 교육목적대로 의도된 대로 잘 집행이 됐는가, 혹시 또 항간에 위법이나 변태지출은 없었는가 하는 걸 찾아내고, 이게 잘못 집행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렵게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자치단체 전입금 예산집행 부적정 상황하고,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 확보에 대한 노력미흡 이건 다 위원님들이 짚으셨어요.

근데 세 번째,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경비 예비비 지출 부적정, 이 행사에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결산검사의견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외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견된 것이고 또 그렇게 급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데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을 위한 용역비로 8,400만원 중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집행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효과와 대국민 홍보, 또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교육부에 12월 연말에 방과후 페스티벌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연차 계획에서는 방과후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페스티벌을 하겠다라고 그냥 항목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은 물론 추경 예산에도 이를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작년 11월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추경에서 다 끝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시점에서 교육부

에서 구체적으로 5,000만원을 정부에서 주고 나머지 돈은 자체에서 해서 방과후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 이런 공문이 내려왔고 그런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담당자들 및 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도 했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설정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예비비였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성립전 예산을 거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방과후 페스티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긴급한 사태라든가 천재지변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방법밖에 저희들이 사용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관리 소홀 면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남는 돈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그해그해 바로 교육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적에 의하면 청주교육청 외 2개 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액 13억 8,88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 그만큼 집행시기가 늦어진 것 같은데 이런 특별한 사유라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5%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 정리 추경 때 그 절감액을 아주 예산액에서 감 조치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은 다 감을 시켰는데 3개 교육청만은 지역교육청 담당자도 업무 미스가 있었고 저희들도 확인과정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교육청만 감을 조정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월되다 보니까 잔액,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 이상일 위원

사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지만 다음에 큰 사업을 위해서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용액을 많이 남겨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넘겼다고 하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 다음에라도 바로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

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저도 이게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컴퓨터 보급 집행 미흡사항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교원들의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인터넷 ICT 활용교육 등 교원업무지원을 위해 보급하고 있는 교단선진화형 컴퓨터 구입 시, 학교별로 교수학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양 이상의 과도한 사양을 선택하여 부족예산을 학교 회계에서 자체 부담하는 등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있음, 저희들도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컴퓨터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급되고 이게 너무 기종이 높은 걸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일선에서는 아예 그건 낡아서 쓰지도 못하고 속도가 느려서 못쓴다고 자꾸 이렇게 신형, 신형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교육현장에서도 한번 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신형 나오고 용량 큰 것, 사실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것만 시키면 되지 뭐 하러 중학교에서 전문가가 쓰는 그런 기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

다. 앞으로 그런 어떤 컴퓨터 사양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컴퓨터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59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명시이월사업이 나왔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명시이월사업 중에 청주농고, 음성고, 제천고 운동부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비로 학교당 7,200만원씩 총 2억 1,600만원을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후 유휴교실이 2007년에 발생함에 따라 연도 내에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시켰는데, 유휴교실 예측이 충분히 예견되었더라면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해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충분히 유휴교실이 생길 건지 어떤 건지 예측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유휴교실이 나올 시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학교에서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유휴교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

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었는데 실제 시점에 가서는 이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밀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일선 학교에 가면 도시 학교는 별로 그런 게 모르지만 면 소재지 이하 학교에 가면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특별교실, 무슨 교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정 시간만 지나면 유휴교실도 생기고 하는데 그 동안은 못 참아서 자꾸 교실을 특별교실을 몇 칸 더 지어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지을 때 교실당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들고 나중에는 이걸 사용을 안하면 관리가 더 어렵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일선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는 게 아닌지 낭비가 되는 것 아닌지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잘 알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두꺼운 겁니다. 이 책에 197쪽을 열어주시면 중간쯤에서 학생후생복지에서 중식비 지원금이 1억 정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201페이지에 또 역시 중식비 지원이 1억 2,000정도 또 203쪽에 급식비지원 5,000만원 해서 약 한 3억 정도가 중식비 지원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더 이상 굶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절약해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급식일수 및 학생 수 변동이 있었던 것이고 또 공립중학교의 급식일수 및 학생 수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립고등학교 급식일수 및 애초 책정한 것보다 학생 수 변동이 있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이해는 언뜻 가는데 그런 경우에 그 자금을 더 증원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46쪽을 보시면 맨 밑에 도서관운영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도 보면 불용액이 6,700만원이 발생했네요, 이게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이런 자금 같은데 한 학교정도 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 생각 안해보셨나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전체 많은 학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그걸 모아 가지고 하나 추가로 하기는 사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그렇겠죠.

소액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경우라도 나중에 추경할 때 그걸 자금을 모아서 어떤 학교 하나라도 더 지원하면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673쪽을 봐주시면 원어민교사 운영, 학생수련 운영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

이 갈 수 있도록 사업변경 또는 사업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677쪽을 봐주시면 학교급식운영이라고 해서 시설지원비를 쓰신 게 있는데 1억 2,287만원이나 불용액 처리했네요, 1억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었을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학교 수가 많아 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남은 돈이 그렇게 모여진 겁니다.

● 위원장 김부웅

방금 답변한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심도있게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결산서 작성에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

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를 선포합니다.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

(12시 01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부웅, 간사 곽정수,

위 원 김병우,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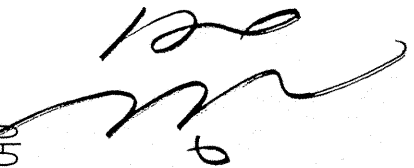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7. 7. .

위 원 장 김 부 웅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0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7. 6. 25.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7. 6.26. (화) 10: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